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7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2
IV . 참고자료	5
1. 고성장기업 개념 및 현황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Ⅲ. 검토의견

1.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2조제 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직전 3개 연도 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성장벤처기업에 융자 및 투자 등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고성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⑩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고성장벤처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직전 3개 연도 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u><신설></u>	제16조의20(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성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 지원

	<u>2. 고성장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u> <u>3. 고성장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u> <u>4. 그 밖에 고성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u>
--	---

통계청은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인 활동 기업 중 최근 3년간 고성장 기준(매출액 및 상용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전체 활동 기업 753만 8,736개 중 고성장기업은 5,681개 (0.075%)이며, 벤처기업에 한정된 고성장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 미비함¹⁾.

개정안에 따라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이 추진될 경우, 유망한 분야의 우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역량을 갖춘 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기업 등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과 고용 등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지분투자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금융기관에서의 융자 등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성장벤처

1) 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1,404개임.

처기업 별도지정 및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벤처기업 등 특정 기업군이 아닌 전체 활동기업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

Ⅲ. 참고자료

1

고성장기업 개념 및 현황

□ 고성장기업 개념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고용 및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 (통계청 기준)

구 분	고성장기업 요건		
	종업원 10인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최근 3년간 고용인원 연평균 20% 이상 증가
우리나라	○	○	○
OECD·EU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 고성장기업 중 업력 5년 이하인 기업은 '가젤 기업'으로 별도 정의

□ 고성장·가젤기업 수 추이 (통계청)

- '23년 우리나라 기준 고성장기업은 5,681개사, OECD·EU 기준 고성장기업은 35,118개사

(단위: 개, %)

고성장 기준 (최근 3개년 20% 이상 증가)	고성장기업			가젤기업		
	'21	'22	'23(잠정)	'21	'22	'23(잠정)
고용 기준 충족	8,127	8,684	8,630	1,946	1,974	1,903
매출액 기준 충족	23,536	27,142	32,169	4,381	4,892	5,325
모두 충족 (한국 기준)	5,003	5,543	5,681	1,388	1,464	1,404
하나 이상 충족 (해외 기준)	26,660	30,283	35,118	4,939	5,402	5,824

- 그간 통계청·한국은행은 고성장기업을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여성기업 등의 유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관리해온 측면